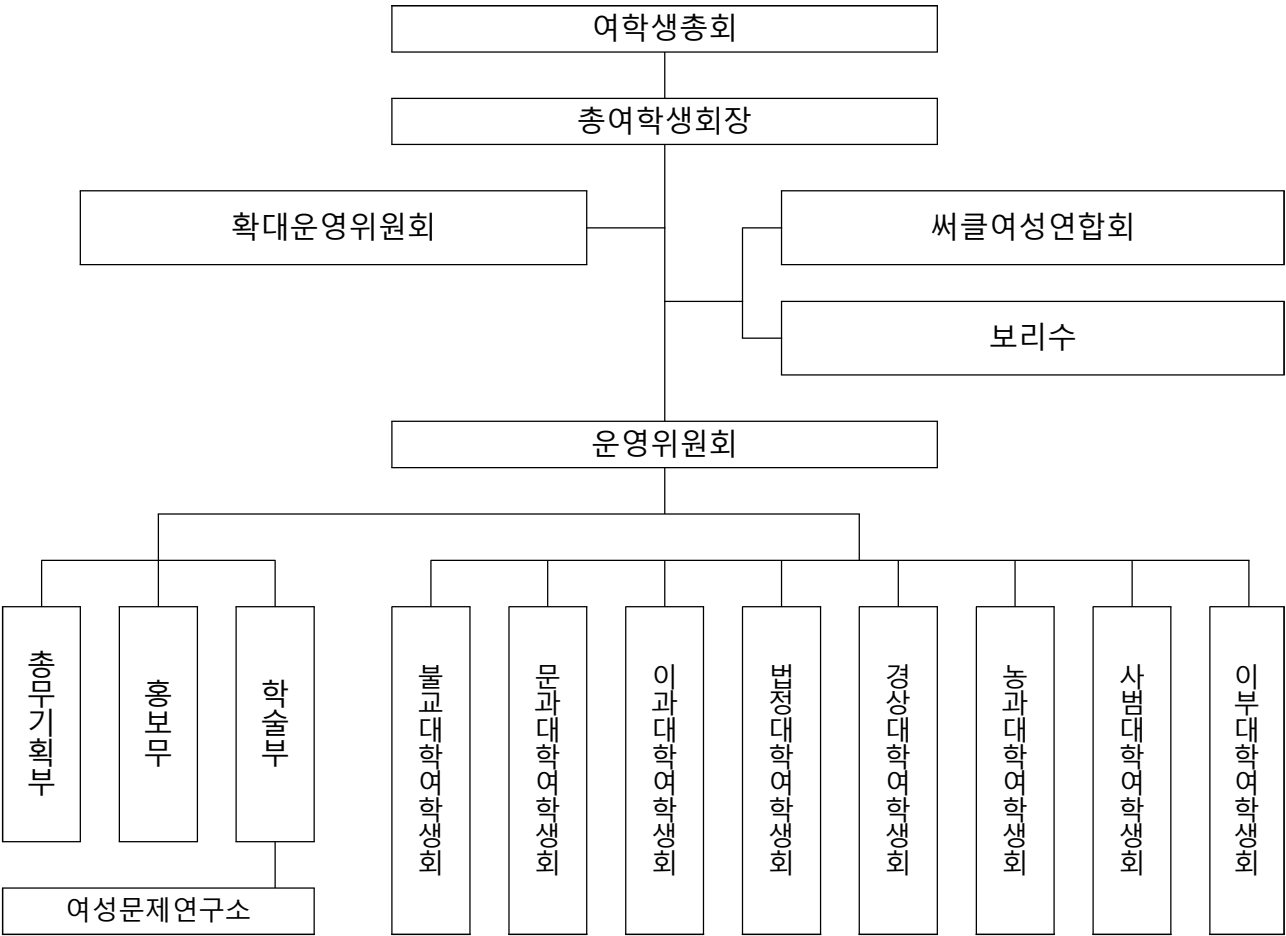


동국대학교 총여학생회칙

기구표



전문

대학은 창조적이고 비판적인 학문 연구를 통한 진리탐구와 그 사회적 실천을 사명으로 한다. 이에 대학은 인간성의 구현을 위한 진리탐구의 장임을 깊이 인식하고 실천 또한 적극적이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실천 방향성은 인간을 억압하고 제약하는 모든 요소를 척결하고 인간에 의한 인간의 지배를 가능하게 하는 사회제반의 구조적 모순을 ____하여 ____ 인간 해방을 향하여 대학인으로서 ____적인 탐구와 실천을 해 나갈 것이며 더 나아가 사회적 자유와 평등을 위한 민주화와 민족분단의 극복에 차명하는 민족적 주체로서 통일 민족국가로의 발전에 창조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이다.

이에 민족, 계급, 성의 억압이라는 삼중 모순 구조 속에 가장 첨예한 피억압 계층을 구성한 이 땅의 여성은 모든 문제 해결의 주체임을 자각하고 그 실체마저 볼 수 없는 역사상 가장 뿌리 깊은 문제에 대한 대담한 대항을 하려한다.

이러한 거대한 움직임 속에서 동국대학 여학생은 종속적인 억압의 굴레 속에서 탈피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결의 아래 여성억압 근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총여학생회를 발족하고 회칙을 제정한다.

제 1장 총칙

제 1조 (명칭)

본회는 동국대학교 총여학생회라 칭한다.

제 2조 (목적)

본회는 대학의 일반성 속에서 여학생의 특수성과 독자성을 기반으로 여학생들 간의 상호 신뢰 및 관계를 증진시키고 민주적이고 독자적인 제반 활동을 통하여 회원 각자를 한 사람의 주체적인 여성으로 정립하며 민주 여성의 자질을 함양하고 사회 전반적인 성차별 구조를 극복하는 진정한 사회민주화를 ____ 그 목적으

로 한다.

제 3조 (회원의 자격)

본 회의 회원은 본교 재학 중인 여학생으로 한다.

제 4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1. 본회의 회원은 선거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본 회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2. 본회의 회원은 회칙을 준수할 의무를 갖는다.
3. 본회의 회원은 본회와 본회원에 대한 부당한 침해가 있거나 정당한 학생활동이 침해를 받았을 경우 이에 대항할 권리를 갖는다.

제 5조 (회의의 구성)

본회는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학생 총회, 총여학생회장, 상설기구, 집행부, 운영위원회, 단대 여학생회, 확대 운영위원회로 구성한다.

제 2장 여학생총회

제 6조 (구성)

여학생총회는 본 여학생회원 전체로 구성한다.

제 7조 (권한)

여학생총회는 여학생회 회칙의 전면 개폐 및 여학생 전체와 관련된 중대한 사항을 토의, 결정할 권리를 갖는다.

제 8조 (의장)

여학생총회의 의장은 총여학생회장이 된다.

제 9조 (소집)

1. 여학생총회는 확대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거나 회원 10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총여학생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
단,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총여학생회장이 여학생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2. 여학생총회 소집은 ____ 14일 전에 공고해야 한다.
(단, 정항 단서의 ____는 예외로 한다.)

제 10조 (의결)

여학생 총회는 회원 200인 이상으로 개최하고 참석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3장 총여학생회장

제 11조 (지위)

1. 총여학생회장은 총여학생회를 대표하며 여학생총회, 확대운영위원회 위원장과 집행부의 의장이 된다.
2. 총여학생회장은 총학생회 운영위원이 된다.

제 12조 (임기)

총여학생회장의 임기는 매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13조 (선출)

총여학생회장은 총여학생회 선거관리위원회 주관 하에 전 여학생의 직접선거로 선출한다.

제 14조 (업무 및 권한)

1. 여학생들의 제반 권리를 적극적으로 옹호할 의무를 갖는다.
2. 집행부 각 부장을 추천하며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이를 임명한다.
3. 여학생총회, 운영위원회 및 집행부를 소집하고 그 업무를 주관한다.
4. 총여학생회의 전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 결산을 편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대 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5. 본회의 회칙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6. 총여학생회와 여학생 전체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를 심의, 조사할 특별 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7. 집행부 각 부장을 해임하고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새로 임명할 수 있다.
8. 확대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 중 총여학생회장의 직무에 해당하는 사항을 집행한다.

9. 위에서 명시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을 경우 확대운영위원회에서 탄핵 받을 수 있다.

제 4장 확대운영위원회

제 15조 (지위)

확대운영위원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구이다.

제 16조 (구성)

총여학생회의 운영위원, 상설 기구장, 각 학과 학년별 여학생 대표로 구성한다.

제 17조 (업무 및 권한)

1. 총여학생회의 전체 사업계획 및 예산을 심의, 확정한다.
2. 총여학생회의 회칙 개정을 발의 및 심의, 확정한다.
3. 총여학생회장이 집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경우 확대운영위원회의 2/3 이상의 동의로 탄핵할 수 있다.
4. 여학생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5. 정기 총회는 일 년에 4번 (3월, 6월, 9월, 11월) 열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임시 총회를 연다. 임시 총회는 확대운영위원의 1/5 이상의 발의로 열 수 있다.
6. 각 운영위원의 출석 및 답변을 요구할 수 있다.

제 5장 운영위원회

제 18조 (지위)

운영위원회는 본 회의 최고 운영기구이다.

제 19조 (구성)

운영위원회는 총여학생회장, 각 단과대 여학생회장과 집행부 각 부장으로 구성한다.

제 20조 (업무 및 권한)

1. 총여학생회의 전체사업계획과 예산을 검토, 심의, 조정하여 확대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2. 결산 보고서를 검토, 심의, 조정하여 확대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3. 확대운영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4. 집행부의 업무진행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 심의 조정한다.
5. 회칙 개정안을 발의하며 확대 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6. 업무 집행에 필요한 특별 기구를 둘 수 있다.
7. 확대운영위원회의 의결을 요하지 않는 제반사항을 의결한다.

제 21조 (소집)

운영위원회는 장기 회의와 임시 회의가 있다.

1. 정기회의는 월 1회로 하며 그 시기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2. 임시총회는 총여학생회장의 요구나 운영위원 5인 이상의 요구에 의해 소집한다.
3. 의장은 회의 소집 3일 전까지 운영위원 전원에게 대하여 일시 및 안건을 통지하고 게시판에 이를 공고한다.

제 22조 (의결)

운영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6장 상설기구

제 23조 (목적)

상설기구는 사회제반의 모순과 함께 여성문제에 대한 문제 제기와 이의 적극적인 실천을 위하여 독자적인 논리를 정립하고 실천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전문기구이다.

제 24조 (지위)

전항의 명시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상대적인 독자성을 부여한다.

제 25조 (구성)

상설기구는 아래와 같은 기구를 둔다.

1. 씨클 여학생 연합회

씨클에 속해 있는 전 여학생으로 구성하며 여성문제의 올바른 인식과 방향성 속에서 왜곡된 여성 문화를 지양하고 진정한 여성문화의 창달에 노력한다.

2. 보리수 (편집부)

여성의 사회제반에 대한 의식고양을 목적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총체적으로 표현하는 종합지를 발간하며 여학생의 언론기관으로서도 활동한다.

제 7장 집행부

제 26조 (지위)

집행부는 본회의 최고 집행기구이다.

제 27조 (구성)

1. 집행부는 총여학생회장과 각부 부장으로 구성된다.
2. 각부 부장은 업무 수행을 위해 차장 및 부원을 둘 수 있다.

제 28조 (업무 및 권한)

1. 확대운영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집행한다.
2. 총여학생회 일체의 사업보고 및 결산보고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3. 각부는 업무수행 상 필요하다고 판단될시 산하에 특별 기구를 둘 수 있다.
4. 집행부는 제반활동의 집행을 위해 다음과 같은 부서를 둔다.
 - 가. 총무부 : 세무경리 및 총여학생회에 관한 제반업무와 총여학생회의 활동기획도 담당한다.
 - 나. 홍보부 : 총여학생회에 관한 홍보활동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관장한다.
 - 다. 학술부 : 학술활동에 관한 제반업무를 담당한다. 업무수행에 필요한 여성문제연구소를 특별기구로서 둔다.
 - 여성문제연구소 : 학내 여학생들의 주체적이고 자발적인 의식을 심화시키고 여성문제 해결을 위한 이론 정립을 하여 참다운 인간으로서의 여성관을 정립한다.

제 8장 단과대 여학생회

제 29조 (지위)

단과대 여학생회는 단과대학 최고의 여학생 기구이다.

제 30조 (구성)

단과대 여학생회는 단과대학의 여학생 전체로 구성한다.

제 31조 (회장)

1. 단과대 여학생회장은 단과대학 여학생 전체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한다.
2. 단과대 여학생회장은 해당 단과대 여학생회를 대표하여 총여학생회의 운영위원이 된다.
3. 단과대 여학생회장의 임기는 단과대 여학생의 모든 활동을 독자적으로 수행한다.

제 32조 (업무 및 권한)

단과대 여학생회장은 단과대 여학생회 회칙에 의해 해당 단과대 여학생의 모든 활동을 독자적으로 수행한다.

제 9장 재정

제 33조 (경비)

총여학생회 경비는 회원이 납부하는 총학생회비와 보조금으로 운영되며 나머지 사항은 총학생회 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른다.

제 34조 (회계연도)

1.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2. 전항의 회계연도는 2기로 나누고 각기마다 예산과 결산을 행한다.

제 35조 (예산편성 및 심의)

1. 예산은 집행부가 편성하고, 총여학생회장이 이를 제출한다.

2. 운영위원회는 심의, 조정하고, 확대운영위원회에서 5일 이내에 심의, 확정한다.

제 10장 선거

제 36조 (선거 시기)

1. 총여학생회장, 단과대 여학생회장, 과 여학생회장은 전년 11월 중에 실시한다.
2. 총여학생회장은 본회 회원 10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입후보하여 직접선거로 하고 최다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제 37조 (선거권)

본교 여학생은 누구나 선거권을 갖는다.

제 38조 (피선거권)

본교 재학 중인 여학생으로서 6학기 이상을 이수한 자면 누구나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다.

제 39조 (선거방법)

본회의 선거는 보통, 직접, 비밀, 평등의 원칙에 입각하여 실시한다.

제 40조 (선거관리위원회)

1. 총여학생회의 선거관리위원회는 운영위원회에서 선정한 10명 이상으로 한다.
2. 선거관리위원장은 총여학생회장이 한다.
3. 선거관리위원 및 선거사무에 관련된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제 41조 (보궐선거)

총여학생회장이 궐위되거나, 확대운영위원회로부터 탄핵을 받을 경우 궐위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확대운영위원회에서 단과대 여학생회장 중에서 호선한다.

단, 잔여기간이 4개월 이내인 경우는 총무부장이 그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제 42조 (선거시행세칙)

기타 선거에 관한 세부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표한 선거 시행 세칙에 따른다.

제 11장 회칙개정

제 43조 (발의 및 개정)

본회의 회칙개정은 회원 50인 이상의 발의나 총여학생회장의 발의, 운영위원회의 발의, 확대운영위원 1/3 이상의 발의가 있을 때 이를 즉시 공고하고, 15일에서 20일 간의 공고 기간을 거친 후 여학생총회에서 의결하여 여학생회장이 3일내 이를 즉시 공포한다.

개정된 회칙은 공포된 순간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 12장 부칙

이 회칙은 1985년 3월 여학생총회의 의결에 따라 효력이 발생한다.